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심의 - 1990.12.14

○朴英淑委員 朴英淑委員입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平民黨이 89年11月10日 오늘로써 1年 1個月 4日前에 發議한 託兒福祉法案과 90年11月 20日 오늘로써 24日前에 民自黨이 發議한 嬰幼兒의保護教育에관한法律案을 小委員會에서 審議하는 과정에서 保社部와 民自黨은 줄속으로 강행처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審議와 여론수렴없이 小委員會 개최 이틀만에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섯 여섯시간 남짓한 小委活動으로 常任委 全體會議에서 表決로 통과시켰겠다는 것은 立法院가 通法府로 전락하여 行政府의 시너로 봉사해왔던 5共 維新政權 때의 치욕을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平和民主黨이 託兒福祉法案을 發議한지 1年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民自黨이 代案을 發議하였다면 좀더 겸허한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진지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與·野합의로 이 法案을 처리하는 것이 國庫들의 지지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國會 차원의 公聽會를 열어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두 法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선의 代案을 마련하자고 우리黨을 提議했습니다. 그러나 議院은 민주적인 의정수립절차 제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만 한 자를 우리 黨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를 小委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民自黨 위원 여러분!

앞으로 한달후에 臨時國會가 있습니다. 우리 平民黨은 託兒福祉法案을 發議한지 1年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들을 한달도 못 기다립니까? 막대한 國庫의 帑政에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黨이 왜 來年 1月の 臨時國會 때까지 산술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平民黨과 民自黨의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本委員會는 어제 小委員會에서 1독회가 끝난 후 審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託兒制度에 관한 平民黨과 民自黨의 기본정책의 차이를 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民自黨은 한가지도 양보할 수 없다고 협상자세를 거부한 쟁점들입니다.

첫째 平民黨案 第3條 4條와 民自黨案 第3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아보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憲法 第4條 第1項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條項에 외거 국민은 國家에서 託兒保育請求權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憲法 第34條 第2項과 第3項에서 國家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와 여성의 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國民의 託兒保育行政需要에 상응하는 託兒保育政策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이 國家에게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民自黨과 保社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平民黨案 第5條부터 18條까지 11條 條項과 民自黨案 第7條부터 35條까지 16條 條項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國·公立託兒所와 民營託兒所간의 관계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공립탁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탁아소가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면서 국·공립탁아소와 민간탁아소가 한 지역에 같이 있을 경우에 이중 어누를 선택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政府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탁아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설과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託兒政策이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國·公立託兒所의 숫자는 탁아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층 아동만을 탁아보육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國民基本權 託兒保育請求權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國家財政의 형편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아동부터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政府가 약속한 3萬2,000個의 국·공립탁아소를 모두 설치하는 95년까지는 소규모 민간탁아소의 중간역할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탁아보육활동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시설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육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託兒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萬2,000個의 국·공립탁아소가 설치 완료되는 95년까지 농어촌 도서벽지 도시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의 맞벌이 부부를 위해 필요한 보호아동 30名미만의 소규모 민간탁아소인 家庭託兒所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民自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 修正案 중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기준으로 이 修正案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民自黨이 주장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등의 제한규정을 비롯하여 허가 승인 규정 폐지 정지 취소규정 보고 검사규정과 위반시 벌칙규정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입니다.

셋째 平民黨案 第9條 17條와 民自黨案 8條부터 附則 3條까지 5個 條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탁아소의 法的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장탁아소에 관한 男女雇傭平等法의 규정과 託兒保育法의 규정은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 자격기준등 직장탁아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託兒保育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施設 등의 세부기준과 運營方法에 관해서는 事業場의 특성에 따라 勞使合意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指導 監督도 市長이나 郡守 보다 地方勞動事務所의 勤勞監督官이 담당하는 것이 託兒政策의 실효성은 물론 豫算執行의 효율성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인입니다. 그리고 職場託兒所의 설치 운영이 단독으로 곤란한 사업자는 地域託兒所를 이용할 수 있는 託兒保育手當을 지급하거나 둘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託兒保育施設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직장탁아소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託兒政策입니다.

넷째 民自黨案의 第4條로부터 30條까지 8個 條項에서 규정하고 있는 託兒保護와 教育機能간의 關係定立 問題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상론과 현실론 중 양자 택일한 事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託兒保護의 量的 消極的인 기능과 嬰幼兒教育의 質的 積極的인

기능은 相護補完關係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823名의 대상아동을 保護 教育할 수 있는 託兒保育施設의 數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그리고 國家의 財政形便으로 미루어 볼 때 教育의 質的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80年 5共 출범 당시의 새마을 幼兒園政策과 같은 託兒政策의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히 요구되는 託兒保育施設을 확충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보육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政府가 약속한 3萬2,000個의 託兒所를 설치 완료하는 95년까지 託兒政策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託兒保育의 教育機能을 강조하는 내용들은 努力義務條項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상과 현실을 다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本委員은 주장합니다만 民自黨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平民黨案 第8條 第2項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시 託兒施設 설치를 위해 託兒保育法에 義務規定을 두는 것과 住宅建設 關係法令에서 託兒施設 設置義務를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立法政策面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95년까지 3萬2,000個의 公共託兒所를 설치 운영하려는 政府計劃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共同住宅 園地의 託兒施設 義務規定은 必修條項인데도 保社部와 民自黨은 왜 이것을 建設關係法令에만 미루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寄附金의 任意募集을 규제하는 現行法이 있기 때문에 施設 資格基準에 미달하는 小規模 民間託兒所는 6個月 이내에 申告를 해서 3個年 이내에 資格을 갖추라고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施設 資格基準에 미달하는 小規模 民間託兒所에 지원·육성을 위해서 寄附金의 制度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 規定에 도달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寄附金의 수령에 관한 허용근거를 託兒保育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平民黨案 第20條에 규정하였는데 이것 역시 民自黨측의 단 한자도 우리 平民黨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므로 與·野合意

에 의한 保社委 單一案 마련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本委員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平民黨은 이미 작년 11월에 託兒福祉法案을 發議했고 民自黨은 1年 2個月이 지난 뒤에야 嬰幼兒保護·教育에 관한 法律案을 代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小委員會에서 民自黨과 保社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초 保社部 입장은 현행 兒童福祉法 施行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託兒立法에는 반대했다 그런데 지나고보니 民自黨의 주장이 공감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平民黨이 발의한 託兒福祉法案의 내용을 대폭 수용했으니 별도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은 필요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民自黨이 제출한 代案을 보면 託兒라는 용어를 모두 保育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民自黨委員 여러분!

平民黨案을 이미 수용했으니 여론수렴이 필요없다고 해놓고 이름은 嬰幼兒保育法이라고 고쳤는데 그렇다면 民自黨은 平民黨法案에 이름만 바꿔서 代案으로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託兒이라는 말은 “탁”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 같아서 싫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保社部가 제출한 91年度 豫算案 說明書가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託兒保護項目으로 事業概要에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생업지원을 위한 탁아소 운영 경비내역에 託兒所新築 50個所 託兒所 運轉 및 改補修支援 탁아급식비 지원등 保社部는 “탁”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民自黨측의 말대로라면 오히려 6·25때 孤兒園을 연상시키는 보육시설이라는 말이 우리 부모들의 정서에 더 많은 거부감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平民黨은 내용만 제대로 들어있다면 형식이야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民自黨이 구차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굳이 託兒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는 저의가 혹시 平民黨의 託兒福祉法案을 의식

한 것이라면 이것은 與黨의 품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年前에 우리 平民黨이 法案을 發議할 때는 필요없다고 거들며 보지도 않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바꿔치기 하는 것이 巨大與黨의 할 일입니까?

本委員의 反對討論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民自黨委員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政府가 犯罪와 無秩序를 뿌리뽑겠다고 犯罪와의 戰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은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은 第2의 公安政局을 조성하여 5共 維新時節로 회귀함으로써 民主化를 갈망하는 國民들의 욕구를 政府는 힘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多數의 議席이라는 힘만 믿고 少數野黨의 國民의 의견을 짓밟으면서 政府와 民自黨은 國會에서 까지 戰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對話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法案을 審議하는 小委員會에서는 速記錄에 남지 않기 때문인지 스스로 한 말을 다시 트집과 오만과 편견으로 일관했습니다. 民自黨委員 여러분! 90年12月14日 이 시점에서 3萬2,000個의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82萬餘名의 託兒保護對象 兒童을 위해 좀더 신중하게 輿論을 수렴하기보다 表決處理를 강행하는 다수의 횡포야말로 바로 國民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닙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를 갖고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與野合意를 위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議會民主主義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託兒法通過를 줄속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反對討論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業과 託兒施設 및 託兒制度를 대상으로 우리는 託兒의 효과를 다시금 재검토 한 制度와 法이 바로 이 法案입니다.

託兒는 이제 더 이상 자난한 方法이 부나 문제가 있는 자녀를 대신 맡아서 보호만 하는 소극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託兒는 우리 社會와 家庭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필요한 제도가 되고 있듯이 이 法案은 託兒를 필요로 하는 직장가 가정의 모든 사람을 지원하고 託兒施設者에 대한 稅制惠澤까지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託兒가 福祉나 教育이나로 양분해서 논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低所得層 자녀에게는 福祉가 우선이며 중산층 자녀는 教育이 우선이라는 아주 그릇된 편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託兒는 그 概念에 있어서나 기능면에서 福祉와 教育으로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福祉와 教育은 統合 概念과 기능으로 인식되어야 하듯이 이 法案은 社會계층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運營者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託兒가 필요한 兒童은 누구나 동등하게 양질의 託兒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低所得者의 託兒支援은 물론 家庭福祉의 증진을 꾀한 法律案입니다. 1年 2年을 두고 논쟁하고 검토해 보아도 託兒事業은 兒童의 요구 어머니와 가족의 요구 그리고 社會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며 또한 利害關係가 상반되는 입장의 學界 施設機關 政府 部處간 혹은 일부 國民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關係者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으로써 託兒事業이나 託兒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福祉事業과 教育事業보다도 그 대상이 복잡하고 따라서 내용도 복합적일 수 밖에 없어서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先望 同僚委員 여러분!

立法過程에서 어떻게 修正되었으며 수정된 具體的인 내용조차 적시하지 않은채 무조건 拙速이니 서둘러 말라는 등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며 나아가서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或者는 이 法律案이 규제위주의 내용으로 그 立法形式도 大統領令이나 保社部

令으로의 委任事項이 많다고 하나 이 또한 다른 立法 예와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무리하거나 지나친 내용이 아니라고 보며 保育事業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도의 規制와 감독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쯁도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法律案을 託兒法案 審議 小委員會에서 審議하여 修正·議決한대로 滿場一致로 贊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補充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朴英淑委員님께서 저희 與黨에서 兒童福祉 法施行令으로 託兒事業을 할 당시 이미 저희보다 먼저 託兒制度福祉法을 發議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法을 反對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우리 政府에서 兒童福祉法施行令 改正案을 갖고 託兒事業을 막 시작한 지 두서너달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本委員은 어떤 발언을 했었고 하면 한 1·2年동안 이 政府가 이 法을 갖고 事業을 하는 것을 두고 보다가 여기에서 생기는 長短點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지 결코 託兒事業을 反對했다든가 託兒法을 反對한 것은 아닙니다. 反對한 이유는 반드시 저는 더 두고 託兒事業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두고 여기의 長短點을 가려내기 위해서 지연을 시켰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